

# 한국모태펀드 2017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17년도 한국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I. 개요

### 1.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총 478억원 내의 (문화 328억원, 관광 150억원)	
기본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벤처기업 등 중소기업(법인)에 대한 투자</li> <li>- 투자기간 내 약정총액의 60%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전문적으로 투자 단, 조합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li> </ul>	
출자 대상 및 신청 자격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서 비상장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창업투자회사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신기술사업금융사 등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창업투자회사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신기술사업금융사 등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	신기술사업금융사
운용사 선정방법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마감 시한		2017년 7월 7일(금), 14:00	
조합 결성 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li> <li>-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li> </ul>	

-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
-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LLC형 투자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후 조합 결성이전에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고, 조합의 핵심인력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함. 단,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함

## 2. 상세 분야별 출자 계획

- ※ 신청 현황에 따라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 선정 가능
- ※ 문화계정의 경우, 당사 기준에 따라 '16년 4분기 투자 집행률이 높은 상위 10개사에 대해 모태 펀드 출자비율을 5%p.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단위 : 억원)

분 야		모태펀드 출자예정액	결성목표액
문 화	방송·드라마	228	380
	NEW 콘텐츠	100	200
	소 계	328	580
관 광	관광산업육성	150	270
합 계		478	850

## 3. 출자 분야별 조합 형태

계 정	분 야	조합 형태	중점지원 해당여부
문 화	방송·드라마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LLC, 신기술사업금융사) <sup>주1)</sup>	○
	NEW 콘텐츠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LLC, 신기술사업금융사) <sup>주1)</sup>	○
관 광	관광산업육성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주1) 한국벤처투자조합(LLC, 신기술사업금융사)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사가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4.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 중복 신청은 2개까지 가능(단, 동일계정 내 중복 신청 불가)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및 투자의무 비율	최대 출자 비율
문화 주1)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방송·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드라마 관련 콘텐츠 및 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을 투자.</li> <li>○ 투자금 우선회수 금지 및 약정총액의 50% 이상은 메인투자<sup>주2)</sup> 의무</li> <li>* 방송관련 콘텐츠 및 기업에는 방송콘텐츠, 제작사, MCN 등이 포함되며 드라마 관련 콘텐츠 및 기업에는 웹, 앱 등 다양한 방식의 드라마 프로젝트, 제작사 등이 포함</li> <li>** 영화 투자는 20% 이내로 제한함</li> </ul>	60%
		NEW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W콘텐츠 및 콘텐츠와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 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되 영화, 드라마 프로젝트의 경우 순제작비의 15%이상이 CG 제작비에 사용되거나 CG 기업이 지분 참여하는 경우만 투자 가능</li> <li>* NEW콘텐츠란 문화산업과 ICT 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콘텐츠</li> </ul>	50%
관광	관광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산업<sup>주3)</sup>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할 것</li> <li>○ 관광산업 분야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sup>주4)</sup>에 약정총액의 15% 이상 투자 (단, 건당 투자액은 5억원 이내, 업체당 총 투자액은 10억원 이내)</li> <li>○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15% 이상 투자 (단, 하기 3개 분야 중 최소 2개 분야에 대해 각각 5% 이상 투자)</li> <li>*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란,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분야 벤처기업, 2) 한국관광공사가 발굴한 관광벤처기업 또는 클라우드 펀딩 유치에 성공한 관광 관련 기업·프로젝트, 3) 융복합 및 혁신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li> </ul>	60%

주1) 문화계정 공통적용 투자의무 비율

- 약정총액의 10% 이내에서만 문화산업 외 타 산업에 투자 가능하며, 해당금액은 별도계좌 관리
- 원칙적으로 재투자 금지, 다만 매년 자펀드 투자 현황 점검(전략적출자자관련 투자집중여부, 자펀드 수익률등) 후 정기 조합원 총회에서 재투자 허용여부 결정

주2) 재무적 투자자 중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최대 투자자

주3) 관광진흥법 상 관광산업, 관광산업 특수 분류상 연관 산업

주4)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이란, 최초 투자 당시 ①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이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재창업자 포함) 또는 ② 창업자로서 매출액 대비 R&D비율이 5% 이상이며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벤처기업을 말함

##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 1.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구 분	문화	관광
창업초기 등 중점지원분야인 경우	○	○
신청 자조합 특성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동일한 분야 투자한 경우	○	○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A등급 이상 받은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실시된 평가)	○	○
약정총액의 10% 이상 외국자본 출자 참여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
자조합 운용사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조합을 해산하고, 자조합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경우	○	○
결성목표액을 초과하여 출자자 모집을 제안하는 경우	○	○
문화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민간 재무적 투자자가 조합 출자에 참여한 경우	○	
영화진흥위원회가 권장한 표준계약서 적용 등 영화산업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한 경우	○	
결성시기별 약정총액 대비 투자금액 비율이 높은 경우	○	

### 2. 선정 배제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선정 배제

◆ 선정 배제 대상은 운용사 선정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하되, 아래 박스에 표시한 항목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배제 가능

- 가.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내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1)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2)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3)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4)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마. 상법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중진기금 및 모태펀드의 누적출자금이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초과하는 경우 (LLC형은 제외)
  - ① 업무집행조합원 납입자본금의 10배
  - ② 자기자본의 5배
  - ※ 창업지원법령상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조합은 정부 누적출자금 합산에서 제외
-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 중인 조합의 투자예정자산(약정금액의 80% - 기투자금액)의 합이 전문인력\* 1인당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 ※ 전문인력의 인정 기준은 각 투자조합의 소관 법령에 따름
-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①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200억원 이하인 경우 : 2명
  - ②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2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인 경우 : 3명
  - ③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8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4명
  - ※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는 소관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

- ※ 신청 자조합의 각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총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leq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1,000$ 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참여(규약상 명시된 경우)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약정총액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sum(\text{각 펀드규모} \div \text{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1,000\text{억원}$$

3. 기존조합의 신규조합 참여제한 규약 관련
  - 신청조합 핵심인력이 신청자조합을 포함하여 상기 투자조합 운용한도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조합 규약에 핵심인력의 동(同)신규조합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4.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 산정 시,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leq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1,000$ 억원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최근 3년 이내에 5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가장 최근에 실시된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D등급 이하 및 평가 보류된 경우
- 신청 자조합의 핵심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상기 표 상의 기간까지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퇴직 : 국민연금의 최초 상실일 기준
  - ※ (적용시기) 한국모태펀드 2017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2017.08.22.) 부터 접수마감 되는 출자사업부터 동 배제 사유 적용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회사(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 ※ (적용시기) 한국모태펀드 2017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2017.08.22.) 부터 접수마감 되는 출자사업부터 동 배제 사유 적용



## □ 선정 보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보류 가능
  - 가. 조합운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 선정 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취소 가능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인 경우
  - 라.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 바. 핵심인력(대표 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 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 사.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신규로 다른 결성 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참여하는 등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이 선정 배제 사유의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아.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경우

### 3. 제재 사항

-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상기 선정취소 조건 중 가. 결성규모 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 거부인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초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형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신규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모태펀드 출자 제한 가능. 다만, 중점지원 분야 자조합 등으로서 약정총액 대비 모태출자비율이 60% 이상인 자조합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반드시 출자 제한
- 선정 조합 중 외국자본 및 문화계정의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의사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금액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출자유치 제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최소 1회 이상 출자제한

### Ⅲ. 주요 출자 조건

항 목	내 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 모태펀드는 조합의 운용 결과 손실 발생시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 않으며,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자조합의 투자의무	· 조합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 '일정비율'이라 함은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60%, 70%) · 다만, 모태펀드에서 결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태펀드에서 선정 시 결정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									
증액방식조합 (Multiple Closing) 출자 조건	·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에 따라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제안서 접수 마감일기준)에 신규 선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단, 타 조합원 전원 동의 총회의사록 등 관련한 제반 서류를 추가로 제출 (예 : 조합자산평가보고서, 조합규약, 신규조합원의 출자 의향서 등)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자조합 존속기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분야)</th> <th>존속기간</th> <th>투자기간</th> </tr> </thead> <tbody> <tr> <td>관광계정</td> <td>8년</td> <td>4년</td> </tr> <tr> <td>문화계정</td> <td>5년 이상</td> <td>4년 이내</td> </tr> </tbody> </table>	구 분(분야)	존속기간	투자기간	관광계정	8년	4년	문화계정	5년 이상	4년 이내
구 분(분야)	존속기간	투자기간								
관광계정	8년	4년								
문화계정	5년 이상	4년 이내								
관리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li> <li>· 관광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매 회계연도말 아래 관리보수 지급기준 중 선택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 or</li> <li>② 투자잔액(분기말잔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0.5%이내)</li> </ul> </li> <li>-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li> </ul> </li> <li>*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300억원 이하: 2.5%이내 / 300억원 초과600억원 이하: 2.3%이내 / 600억원초과: 2.1%이내 (단, 액셀러레이팅 분야는 300억원 이하: 3%이내 / 300억원 초과 ~ 600억원 이하: 2.5%이내 / 600억원초과: 2.3%이내 적용)</li> </ul>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신주보통주로 투자한 금액은 투자잔액 계산시 120%로 가중치 부여 가능</li> <li>· 문화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성일로부터 3년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2.0% 이내</li> <li>- 결성일로부터 3년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기준 2.0% 이내</li> </ul> </li> <li>*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신주보통주로 투자한 금액은 투자잔액 계산시 120%로 가중치 부여 가능</li> </ul>
기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드라마, NEW콘텐츠 및 관광산업육성 분야 : 3% 이상</li> </ul>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단, 문화계정은 30% 이내로 적용)</li> <li>· 기준수익률 이상의 IRR을 달성한 경우, 계단식으로 기준수익률 하향 조정 가능 (단,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기준수익률이 0%인 조합 제외)</li> <li>*예)청산조합 IRR이 12% 초과, 17% 이하인 경우 : 기준수익률을 1%p. 하향 적용 청산조합 IRR이 17% 초과, 22% 이하인 경우 : 기준수익률을 2%p. 하향 적용 청산조합 IRR이 22% 초과하는 경우 : 기준수익률을 3%p. 하향 적용</li> </ul>
추가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투자금액 대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신주보통주 투자금액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모태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text{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times \text{Max} \left[ \left( 10\% \times \frac{\text{신주보통주 투자비율} - 40\%}{60\%} \right), 0 \right]</math>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투자금액 대비 창업초기기업에 투자된 투자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모태펀드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li> </ul>
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 관리</li> <li>·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li> <li>·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li> </ul>
회계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감사인을 선정</li> </ul>
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RP 사용 의무화</li> </ul>

항 목	내 용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가 현저하게 적은 금액(출자비율 10%미만)을 출자하는 자조합의 경우 타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으로 예외 적용 가능</li> <li>·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li> <li>· 문화계정 프로젝트 투자 시 적용사항</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1. 투자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배급하는 한국영화 프로젝트에 투자금지(단,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제외)</li> <li>- 원금보장식 대출성 투자 금지(원금상환약정 금지)</li> <li>- 임금 체불 제작사 투자 금지</li> <li>- 출자자 관련 프로젝트 중 제작완료 후 배급·유통 단계 프로젝트 투자금지</li> <li>- 주요 출자자가 제작한 프로젝트에 투자금지</li> <li>- 주요 출자자가 메인투자자로서 관리하는 프로젝트 투자누계액은 조합 전체투자누계액의 40% 미만이어야 함</li> <li>- 영화제작 이후 영화 배급·유통 단계(개봉60일이전 이후)에 투자되는 경우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에서 제외</li> </ul> <p>2. 준수 의무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완료 이전 단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단, 선정 조합 규약 협의 시, GP 책임하에 문전사 의무등록 예외 조항 반영가능)</li> <li>- 자조합 메인투자 시 영화 드라마 스텝 인건비 별도계정 설치, 자조합부분투자시는 권고사항</li> <li>- 문화체육관광부(관련 공공기관 포함)가 수립한 표준계약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영상(방송영상 제작, 방송출연, 방송영상제작스태프) 관련 표준계약서</li> <li>· 영화(근로, 시나리오, 투자) 관련 표준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는 영화산업 노사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표준 계약서 적용을 권장하고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시급 준용으로 제작환경 개선의무를 대신함</li> </ul> </li> <li>· 공연예술 관련 표준계약서</li> </ul> </li> <li>- 공연예술 분야 투자 시 해당공연에 대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에 전산화된 예매정보(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함</li> </ul> </div>

#### IV.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2차 심의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계정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 자	내 용	비 고
'17. 7. 7.	제안서 접수 마감	14:00까지
'17. 7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17. 10월	조합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V.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 ○ 지원 방법

-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선택 가능

가. 현장 접수 : 제안서 양식(붙임 1. 참조)에 의거한 제출 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나. 온라인 접수 : 신청 매뉴얼(붙임 2.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제안서 제본 3부 별도 송부)

<http://install.k-vic.co.kr>

##### ○ 접수 마감일

가. 현장 접수 : 2017. 7. 7. (금) 14:00

나. 온라인 접수 : 2017. 7. 7. (금) 10:00

\* 온라인 접수는 공고시부터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는 24시간 접수하나, 접수 마감일은 10:00까지만 접수

\* 온라인 접수시 제안서 제본 3부는 접수 마감일 14:00까지 우편, 퀵서비스 등으로 송부(현장 접수할 필요 없음)

○ 출자 설명회

- 일 시 : 2017. 6. 21. (수)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VR빌딩 한국벤처투자 지하1층 블루룸

※ 설명회 참석시 공고문 출력하여 지참 요망

## VI.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VII. 접수처 및 문의 방법

- 현장 접수처 :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운용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 1706-5) VR빌딩 4층

- 문의 방법

가. 문화, 관광계정 : 02-2156-2461, fof@k-vic.co.kr

나.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2156-2479, datacenter@k-vic.co.kr

2017. 6. 19.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 1차심사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대분류	소분류	주요 평가항목
운용사	대표이사/주주	대주주의 재무적 안정성, 대주주의 변동 횟수, 자기 자본 순이익률, 대표이사 업계 경력
	재무안정성	자본충실도, 총자산 수익률
	조합운용실적	청산조합 수익률, 모태펀드 자펀드 평가수익률
	투자실적	최근 결성 조합의 약정총액 대비 누적 투자금액, 창업자 투자 비율, 전문인력당 평균 미투자잔액
	준법성	최근 법규 등 위반 내용
조합 운용 능력	핵심인력 경력	핵심인력의 관련 분야 경력(평균), 대표펀드매니저의 펀드운용 경험, 신청 펀드 집중 가능 여부
	핵심인력 투자실적	최근 투자/회수 실적, 투자 금액 및 투자 기업수
	팀웍 및 관리능력	대편/참여인력이 팀으로 함께 근무한 기간(평균), 핵심인력 중도이직 및 근속기간(평균), 리스크/컴플라이언스 조직 및 전담인력 존재 여부
가점 등	공고문 II-1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 \* 총 100점 만점 중 운용사 50점, 조합운용능력 50점이며, 가점은 최대 20점
- \* 창투사 이외의 운용사에 대한 평가비중 및 평가항목은 다소 상이함